

미국 California 주 Silicon Valley 지역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제도 및 지원정책 조사

-이상규 연구위원(산업경쟁력실)
-김동수 부연구위원(국가균형발전센터)

1. 출장 개요

- 출장지: 미국 California주 San Jose시, Sacramento 시
- 출장일: 2008년 4월 8일~16일
- 출장자: 이상규(연구위원, 산업경쟁력실)
김동수(부연구위원, 국가균형발전센터)

2. 출장 목적

- 미국 California 주 Silicon Valley 지역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제도 및 지원정책 조사

3. 출장 일정

- 4월 8일(화): 서울 출발, San Francisco 도착
KOTRA 관계자 (1명) 면담

- 4월 9일(수): San Jose 소개 KIICA에서 관계자 (2명) 면담
San Jose 시 인허가 담당자 (1명) 면담
- 4월 10일(목): San Jose 소개 KIICA에서 관계자 (2명) 면담
San Jose 시 인허가 담당자 (1명) 면담
- 4월 11일(금): Sacramento 소개 주정부 관계자 (2명) 면담
Oakland 소개 설계사무소 project manager (1명) 면담
- 4월 12일(토)-13일(일): 수집자료 분석 및 면담자료 정리
- 4월 14일(월): San Jose 시 인허가 담당자 (2명) 면담
- 4월 15일(화)-16일(수): San Francisco 출발, 서울 도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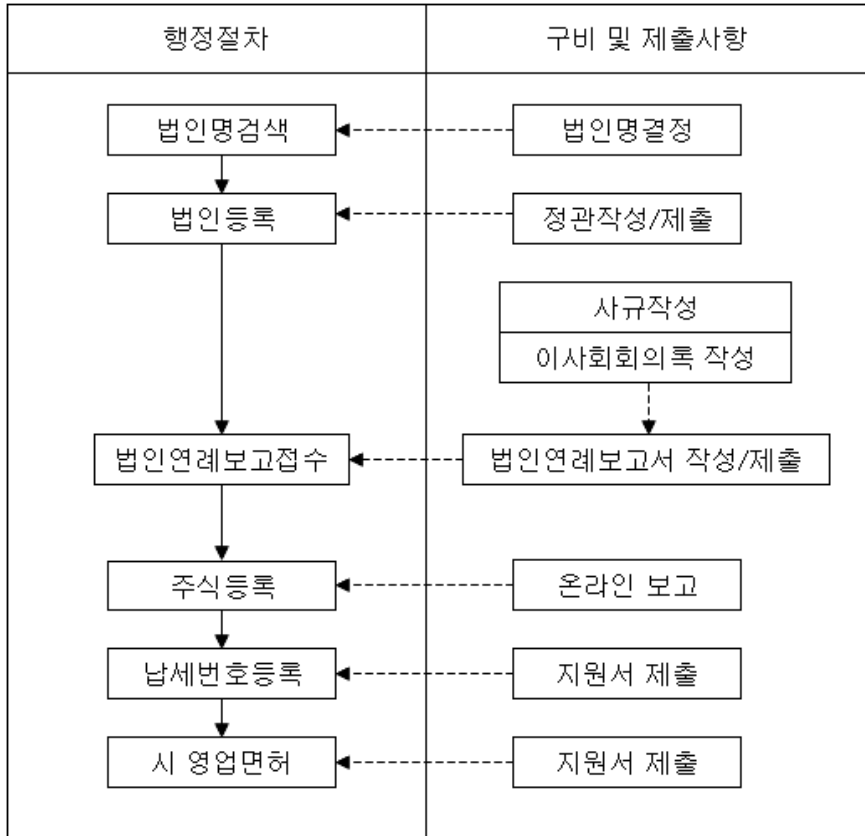
4. 출장 주요내용

- 관련 공무원, 실무경험자, 회계사, 변호사 등과 면담 (명단 참조)

면담자	소속	면담내용
구본경	KOTRA 차장	- 캘리포니아 주의 비즈니스 환경 - 창업 메뉴얼
김종갑	KIICA 이사	- 창업제도의 기본사항 - 공장설립 관련 제도의 이해 -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
Benjamin Corrales	Planner, City of San Jose	- 공장설립 계획 인허가 관련 절차 및 비용 - City of San Jose 제공 incentive
김용세	변호사 * 창업(법인설립) 대행 전문	- 캘리포니아 주 창업절차 및 행정제도 - 행정비용 및 소요기간 산출
Jeffrey Lee	공인회계사 * 창업(법인설립) 대행 전문	- 캘리포니아 주 창업절차 및 행정제도 - 행정비용 및 소요기간 산출
Sherman Ong	Specialist, City of San Jose	- 공장설립 건축 인허가 관련 절차 및 비용 - 전산 시뮬레이션에 의한 비용 산출 예시
Tom Lease	Project Manager, California Business Investment Service	California 주 창업 및 공장설립에 대한 주정부차원의 incentive
Patrick McGuire	Project Manager, California Business Investment Service	Enterprise Zone의 개념과 인센티브 제도
김두순	한동대 공간환경 시스템공학부 교수 (현지 설계사무소 운영)	공장설립 제도의 이해 및 세부 행정비용 및 소요기간 산출
John Kim	Planner, City of San Jose	- 공장설립 계획 인허가 관련 절차 및 비용 - 전산 시뮬레이션에 의한 비용 산출 예시

□ 캘리포니아 주 창업제도 파악

-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행정절차와 법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구비사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경우, 설립절차가 간소화 (그림 참조)



- 캘리포니아 주의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설립절차는 행정절차 6단계를 포함하여 9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, 소요 경비 및 기간은 다음 표 참조

<표> 캘리포니아 주 주식회사 창업제도

절차	담당기관	법	양식	소요기간	비용
1. 법인명 (Name of Corporation)	주 정부 (Secretary of State)	주 회사법 (CA Corporation Code)		즉시	\$10
2. 정관(법인등록) (Article of Incorporation)	주 정부 (Secretary of State)	주 회사법 (CA Corporation Code Section 200)	정 관 / 법 인 명 / 주소/주식정보	대리인 1주, 개인 2~3주	\$100
3. 사규(By-Laws)	기업의 내부자료	주 회사법 (CA Corporation Code Section 13242)		변호사가 주로 담당	
4. 이사회회의록 작성 (First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)	기업의 내부자료	주 회사법 (CA Corporation Code)		변호사가 주로 담당	
5. 법인연례보고서 (Statement of Information)	주 정부 (Secretary of State)	주 회사법 (CA Corporation Code)	법인등록(2) 후 90일 이내	보고	\$25
6. 주식등록 (Filing Notice of Stock Transaction)	주 주식회사 감독관 (Corporation Commissioner)	주 회사법 (CA Corporation Code Section 25102)	양식 25102	보고	\$25~ \$300
7. 납세번호 등록 (FEIN/SEIN,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)	국세청(IRS)	연방정부법 (US Code Title 26)	납세번호 지원서(Form SS-4)	즉시	
	주 고용개발부 (CA EDD)	주 세금법 (CA Revenue & Taxation Code)	DE-1	즉시	
8. 시 영업 면허 신청 (Business License)	시 정부	시 정부법 (CA San Jose Municipal Code Title 6)		즉시	
9. 은행구좌개설 (Bank Account)			정관사본/납세번호/법인연례보고서	즉시	

○ 캘리포니아 주의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행정처리 소요기간은 개인이 수행하는 경우 2-3주 변호사 및 회계사가 수행하는 경우 1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

- 학생들의 창업을 일부 제외하면 대부분 법인설립은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인설립에 드는 소요기간은 약

1~2주이고 대리 비용은 약 \$1,000~\$4,000 정도로 조사 (CA, City of San Jose의 경우)

○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, 아이디어 창업 및 관련 산업 창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창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

- 실리콘 벨리 지역 주변에는 Stanford University, UC-Berkeley, 등의 대학이 있어 고급인력의 공급이 원활하고, 실리콘 벨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하여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가 지대

□ City of San Jose의 공장설립 허가제도 파악

○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,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는 시 정부 소관으로 산호세 시 법률에서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 및 제도를 규정

- 공장설립에 관련된 법률에는 5개의 주요 장(Title)이 있으며, 이들 법에 의거 시의 관련 규제를 적용

※ Municipal Code Title 17, 18, 19, 20, 24 등이 관련 조항

- 계획허가에 관한 사항은 20장과 21장에 규정되어 있으며,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주로 24장에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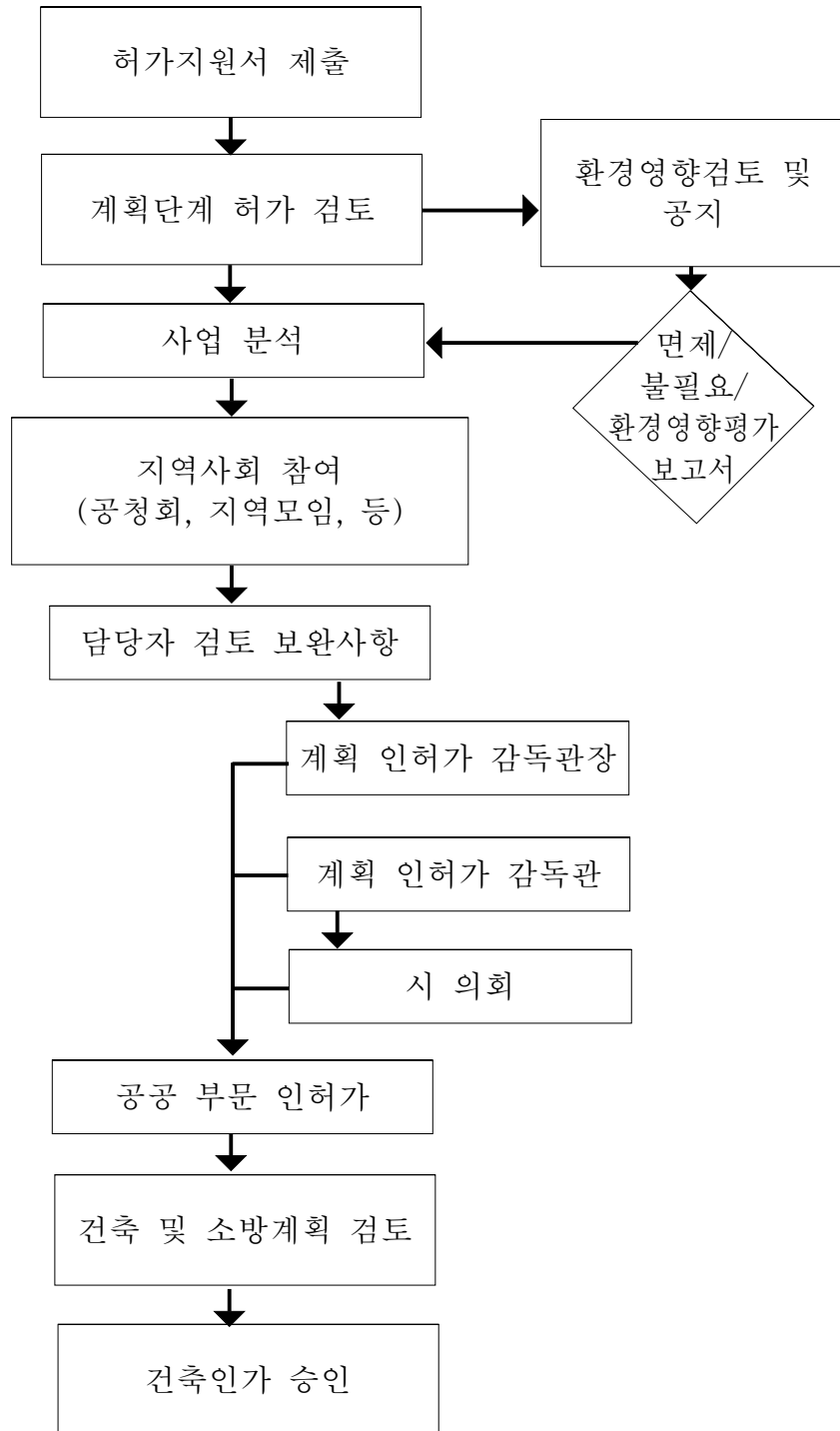
○ 이들 계획 및 건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구역(zone)은 주거(Residential), 상업(Commercial), 산업(Industrial) 등 세 종류의 구역으로 구분

○ 산업 구역에 속하는 공장설립의 경우, 다시 IP(Industrial Park), LI(Light Industrial), HI(Heavy Industrial) 등 세 가지 산업 지역(Industrial Zoning District)으로 구분되어 규제 적용

- IP는 R&D, 제조, 조립, 실험, 사무실 등 용도를 포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설계를 통해 중화될 수 있는 위험물질을 다룰 수 있는 경우에 해당

- LI는 R&D를 제외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, IP와 마찬가지로 중화되지 않는 위험물질 사용은 제외되나, IP보다 위험물질에 대한 높은 수용도
 - HI는 R&D를 제외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이 해당
- 허가의 종류는 Industrial Zoning District와 해당 업종에 따라 Administrative Permit, Permit, Special Use Permit, Conditional Use Permit 등 받아야 하는 허가의 종류가 상이
- 이는 각 Industrial Zoning District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본래 용도를 벗어나는 사용에 대해 Permit, Special Use Permit, Conditional Use Permit의 순으로 허가의 강도가 점점
 - 보통 제조업의 경우, 주 업종이 경공업에 가까운 업종은 IP와 LI 지역에 단순히 Permit을 받으면 되나, 중공업에 가까운 업종은 HI 지역에서만 Permit 부여
- LI와 HI 지역에 공장이 설립되는 제조업 업종의 경우, Permit은 통상 Site Development Permit이 되는데, 이는 지역의 rezoning을 통해서만 Permit이 허용되는 Planned Development Permit과는 차별
- Site Development Permit은 단순히 해당 zone에서의 용도에 맞게 공장 설립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rezoning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 허가절차인 Planned Development Permit 불필요
- 모든 공장설립 계획에 대한 허가절차는 다음의 Flow Chart에 따라 이루어지는데, 특히 설립될 공장이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허가절차와 소요기간이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

[그림] San Jose 시의 공장설립 절차도



자료 : 산호세 시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

- 공장설립 계획을 가진 기업은 우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의 Zoning과 미래의 토지 사용계획을 제시하는 General Plan 검토 수행
 - 그러면, 첫 번째 단계로서 해당 Permit를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Fee를 포함하여 해당 신청서를 제출
- 신청된 Permit에 대해 Planning Department에서 먼저 이를 검토하게 되며, 특히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경우 통상 환경영향 검토(Environmental Impact Review)도 동시에 수행
 - 환경영향검토의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(EIR, Environmental Impact Report)의 제출이 면제되거나, 혹은 환경청산(Environmental Clearance) 수행

□ California 주정부 창업 지원정책

- 세금지원 (Tax Incentives)
 - 15년간 44개의 산업공단 (Enterprize Zone)의 세금지원: \$20 million 이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환불과 sale tax 감면, 5년간 종업원 임금에 대한 세금 감면, \$20,000 까지 감가상각 (Business Expense Deduction), 이자비용의 세금감면 (Net Interest Deduction), 순손실의 보전 (Net Operating Loss Carryover), 종업원 개인소득에 대한 감면 (Individual Income Tax Credit)
 - 연구개발 비용의 세금환불 (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): 내부비용의 15% 외부비용의 24%까지 세금을 환불
 - 자본투자에 대한 세금환불 (Capital Investment Tax Rebate): 제조업 (SIC 3500-3899)의 설비투자에 대해 재산세(Property tax)를 협상하여 감세 가능
- 고용지원 (Employee Training)

- 종업원 훈련 지원 (Employment Training Panel): 제조업과 일부산업업체에게 종업원교육 비용을 지원
 - 구인·구직 one-stop 서비스 (Job Referral and Placement):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구인과 구직을 연결하여 주고 recruit와 근로자의 적성평가 등도 수행
- 금융지원 (Financial Incentives)
- 산업개발채권 (Industrial Development Bonds): 최고 \$40 million까지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등에 대해 저금리로 용자
 - 공해통제재원 (Pollution Control Financing): 공해조절, 쓰레기 재활용 등의 새로운 사업이나 합병에 대해 세금면제 채권으로 재원 마련
 - 중소기업용자보증 (Small Business Loan Guarantee): \$0.5 million 이내에서 용자금의 90%까지 중소기업의 새로운 시설투자에 대해 보증
 - 중소기업청용자 (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504 Loan): 기업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확정금리로 장기용자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매월지출금을 줄여주는 제도
 - 재활용발전지역용자 (Recycling Mkt Devlmt Zone Revolving Loan): 재활용발전지역내의 재활용관련 제조업체에 10년동안 확정저금리로 최고 \$2 million 까지 재활용 project의 75%를 용자
- 이외에도 중소기업개발센터(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)가 창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incubating도 담당함으로써 창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, 은퇴경영자서비스팀(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)을 통해 창업에 대한 실질적 정보 제공 및 network 형성에도 도움

□ San Jose 시정부의 창업 지원정책

○ 산업공단 (Enterprise Zone)

- 시정부의 요청에 의해 주지사실에서 결정하며 15년 동안 유지되며 5년 연장이 가능
- 철저한 경제논리에 의해 저개발 지역을 선정
- 주정부지원의 내용과 동일하며 부분적으로 세금 감면을 등에 대해 시정부 차원에서 협상이 가능

○ 중소기업 건축세금감면 (Small Business Construction Tax Incentives)

- 고용인 35인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비 주거지역에서의 3000 square ft 이내의 신규건축이나 임대확장에 대해 건축세금의 50% 감면

○ 특별임대증진 (Special Tenant Improvement Program)

- 비어있는 건물을 내부수리하며 임대하는 연구개발 산업체에게 인허가 과정의 시간과 절차 축소 (Expedited Plan Review and Inspection) 그리고 세금감면을 제공

○ 지역주민고용우대 (Local Area Employment Program)

-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가 지역주민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할 때 세금감면의 혜택 부여

○ 효율적 산업용수 기술지원 (Water Efficient Technologies)

- 고용인 35인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비 주거지역에서의 3000 square ft 이내의 신규건축이나 임대확장에 대해 건축세금의 50% 감면

□ 우리나라에의 시사점

-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, 창업제도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창

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한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자연스럽게 함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

- 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입을 보장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자생력 있는 기업들을 양성하며,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
 - 창업이 자유로운 반면, 수입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일정액의 기업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효율적인 기업들만이 생존할 수 있는 만큼 한계기업의 퇴출을 조세제도를 통해 유도
- 창업제도와 달리 공장설립의 경우,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도록 하여 공장설립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
- 이와 함께 지역주민 및 환경 보호에 힘쓰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, 기업 환경 측면에서는 공장설립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처리 기간이 길어 조기 사업화への 걸림돌로 작용
 - 그러나 환경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, 이에 대해 신속하게 공장설립이 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제도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
-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처럼 기업가정신의 원활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개방적인 창업제도 시스템을 반영할 필요
- 이와 함께 산업 및 시장에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일정액의 조세를 부담시킴으로써 한계기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 수립도 필요
-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절차 및 지역의 경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별적으로 수용할 필요
-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 신속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규제의 단계별 적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

- 즉,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사전 분류가 된 업종이나 용도에 대해 환경영향검토 및 평가를 면제해 주고, 이들 리스트에 속하지 않더라도 환경영향이 심각하지 않은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보고서의 제출을 면제
- 이와 함께, 다양한 지역경제 기여 케이스에 대해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 및 조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 ♣